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28	3. / (총 35	5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정 혜 은		044-202-3575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윤 동 빈		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 과 장 김성훈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당자 이승훈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전 화	044-202-3155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3615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담 당 자	정 영 기 문 달 해 류 재 현		044-202-3595 044-202-3578 044-202-357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실행방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마스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포장지만 속여 파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지시했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14일(일)부터 6월 27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28.9명으로 이전 2주간(5. 31.~6. 13.)의 37.6명에 비해 8.7명 감소하였으며,
 -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22.1명으로 이전 2주간 (5. 31.~6. 13.)의 36.5명에 비해 14.4명 감소하였다.
 - 집단감염 환자수는 14건으로 이전 2주간(5. 31.~6. 13.)의 11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기존 8.9%에서 10.0%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5월 31일 ~ 6월 13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3.5명
지역사회	37.6명
수도권	36.5명
집단 발생¹⁾ (신규 기준)	11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9% (54/609)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한편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4.2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그 전 2주(5. 31.~6. 13.)에 비해 8.3명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규모 시설의 집단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사례가 증가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 특히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여 중증환자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5월 29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IS 량 인구 이동 건수 통신사 트매출 소비 금액 S카드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사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네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20일~6월 21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13일~6월 14일)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99%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①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13일~6월 14일) 대비 3.2% 증가(약 109.1만 건)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4주가 총 2.4% 증가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② (카드 매출)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13일~6월 14일) 대비
 1.6% 하락(△214억 원)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4주간 총 6.0% 하락(△821억 원)하였다.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❸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주말(6월 13일~6월 14일) 대비 1.9% 증가(41.1만 건)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4주간 총 1.4% 증가(30.7만 건) 하였다.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 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3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의 단계를 조정*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 ① 사회적 거리 두기 (2.29~3.21) → ②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22~4.19) → ③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4.20~5.5) → ④ 생활 속 거리 두기 (5.6~)
 - 그러나 각 단계의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성격의 조치들이 혼재되어 시행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 또한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하였다.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 *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
 -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사회적 거리 두기					
구분 (최근 2주간)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_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_	-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 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 공공·민간행사 사례 >

-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치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 * 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 등의 경우 예외 적용
 - ** 4m²(약 1평)당 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 제한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 시설 위험도는 상황 변경 등에 따라 평가 및 변경 가능
-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 발생
 -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 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	다중0	용시설	대상	제 한조치(안)	>
--	---	----	-----	-----	----	----------	---

제한 조치	예시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시설)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
정상 운영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 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 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추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4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 의학한림원 회장)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였다.
 - *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概算給)을 **지급****했었다.
 - *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
 - ** (1차, 4.9) 146개 의료기관 1,020억 원, (2차, 5.29) 66개 감염병전담병원 1,308억 원
 -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업소로 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결정하여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였다.











<1>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우선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 *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6개소)
 -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⑤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로서,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감염병전담병원 추가 보상

-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 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이 외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3>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4>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 및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 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 □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6.26)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 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 대상**이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3월 말 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
 -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 원이다.











-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 원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
 -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대구 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 원이 지급되었다.
- □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외에도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같은 달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조5000억 원(6.25일 기준)을 지급한다.
 -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4,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6.16일 기준 3,610억 원 대출 완료)하고 있으며, 3차 추경을 통해 4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 등에 감염예방·격리료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등도 연기 하여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5월 2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우리 의료기관은 어떤 지원을 받는지 길라잡이로 확인하세요'참고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실내체육시설 809개소,
 ▲ 음식점·카페 4,068개소 등 40개 분야 총 15,980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96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음식점·카페 등 29개소를 점검하여 거리두기 미준수 등 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북에서는 실내체육시설 226개소, PC방 129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68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98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1개반, 779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71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612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00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7,2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5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76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27)는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9개소 2,54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 27일) 입소 206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 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붙임 > 1.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 2. 거리 두기 추진 경과
 - 3. 집합·모임·행사 제한 해외사례
 - 4.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마스크 착용법











붙임1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1 │ 검토 배경 및 경과

① 검토 배경

- 그간 확진자 규모 및 유행 현황,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거리두기 강도 조절
 - * ① 사회적 거리두기 (2.29~3.21) → ②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22~4.19) → ③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20~5.5) → ④ 생활 속 거리두기 (5.6~)
- 그러나 긴급한 대처로 인해 각 단계 조정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한계 존재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에도 위험도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 운영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성격 조치가 혼재되어 정비 필요
 -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와 생활속 거리두기(5.6~) 시 모두 유흥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생활속 거리두기 시 위험도 낮은 공공시설(박물관 등)도 운영 중단
 -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있어 메시지 혼선이 초래된다는 전문가 지적 제기
-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각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 명확화·구체화 필요

2 그간의 경과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 실시











2 │ 단계별 전환 기준 및 목표

① 단계별 명칭 및 전환 기준

- (명칭) 메시지 혼선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본 명칭을 통일하고 상황의 심각성 및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 (전환기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발생 수준(1→2단계), 급격한 대규모 확산(2→3단계) 등을 아래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 역량, 고위험시설 분포, 인구 특성 등 유행 지역의 특성 및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 의견 등도 함께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최근 2주간)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50명 미만	50명~100명	100~200명 이상,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단	미만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_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_	_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2 목표 및 원칙

(1)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상황)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
-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 통제
- (핵심 메시지) 일상적 사회경제활동 영위하되 생활방역지침 엄격 준수
 -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사회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침 준수 권고,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예외적 제한 가능











(2) 2단계

- (상황)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 *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로미상감염·집단감염 등이 계속 증가
- (목표)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 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감소(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
- (핵심 메시지) 필수적이지 않은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3) 3단계

- (상황)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전개
 -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 발생
- (목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 (핵심 메시지)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 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과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 중단하고, 이 외 모든 시설의 야간 영업 금지 등 운영 제한

<방역수칙 단계별 목표 및 핵심메시지>

– –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1단계 수준으로 신규	급격한 유행 확산을
목표	영위하며 유행을 통제	확진자 감소세 전환	차단하며, 방역망
	하도록 방역관리 조화	및 추세 유지	통제력을 회복
<u>핵</u> 심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메시지	적인 경제활동 허용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3 단계별 실행방안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 실시 가능
 -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 다만.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등)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스포츠 행사)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관중 제한적 입장
 - * 현재는 무관중 경기 진행 중, 향후 단계적으로 관중 입장 허용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및 민간 분야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또는 부분적 제한
 - 다만,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위반 시 벌칙 적용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콜센터,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 시설 위험도는 상황 변경 등에 따라 평가 및 변경 가능
- 공공시설의 경우 환자 발생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운영 제한(입장인원 제한 등) 또는 중단 가능
 - * 현재 운영 중단되어 있는 공공시설 중 위험도 낮은 시설(공원, 공연장 등) 운영 재개
- (학교)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수업 또는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점심 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2) 2단계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
 -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경우는 연기·취소 하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공공·민간행사 사례 >

-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인원 기준 충족 시에 한해 허용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실시
- (다중이용시설) 비필수적 외출·모임이 자제되도록 시설 운영 제한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 중단, 다만 비대면서비스 가능 시 운영 유지
 -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 의무화 등 차등적 조치(행정명령)
 - ① 유홍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
 - *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 등의 경우 예외 적용
 - ②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입장) 인원을 제한*
 - * 4m²(약 1평)당 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 제한
- (학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수업의 경우 등교인원 축소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1/2)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3) 3단계

-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 중단
- (다중이용시설) 필수 시설 이외에 모두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 중단
 -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확대
 - ①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 다만 음식점·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 ② 그 외 음식점,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조치(방역 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 ③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예외

<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안) >

제한 조치	예시
운영 중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고위험·중위험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
정상 운영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 (학교)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	공 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조치	중 시 설	민 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명)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 교 <i>,</i>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광 광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 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4 지용범위, 기간 및 조정절차

① 조치 범위 및 적용기간

- (적용 범위) 전국적으로 단계 조정 적용
 - 다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 적용 차등화
 - * 적용 차등시에는 중대본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은 단계 적용에 따라 시설, 사업장 등에 대하여 **운영자제 및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실시
- (적용기간) 각 단계 적용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 조정
- (적용내용) 감염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은 유연·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 예) 2단계에서는 등교·원격수업 병행이나, 상황에 따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조치 강화

② 단계 조정 절차

- (기본 절차)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
 - 다만, 3단계로 상향 시에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5 이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 1단계 실행방안에 맞추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 조정
 - 위험도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 재개방안 마련
 - * 스포츠 경기 관중 제한적 입장, 운영 중단 중인 일부 공공시설 운영 재개 등











붙임2

거리 두기 추진 경과

□ 사회적 거리두기(2.29~3.21)

- (배경) 신천지 교회 감염(2.19)을 계기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 (조치) 공공시설은 제한적 운영하고 민간시설은 운영 자제 요청 했으나 행정적 조치는 부재, 어린이집(2,27~) 및 학교(3.2) 휴업 명령조치

□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5)

- (배경) 확진자 수는 감소했으나 감소세가 정체되고, 전세계적 유행이 확산, 국내는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사업장 등 집단발생 확산
- (조치) 국민에게 외출 자제, 사업장 재택근무 등 밀집환경 최소화 요청,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하는 행정명령 등 시행
 - * **필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 등), 유흥시설 (콜리텍·클럽·유흥주점 등)운영 중단 권고(3.22~4.5),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 * 지자체 선택: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 위반 시 지자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벌칙 부과(300만원 이하 벌금)등 조치 가능,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6~4.19)

-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일정부분 나타나는 반면, 해외 유행 확산, 신규 확진자 규모 지속(100명 내외)됨에 따라 2주간 연장
- (조치) 기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고, 요양병원· 정신병원·교회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 기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행정명령 연장
 -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학원·교습소 운영중단 명령 확대**(4.9~4.19), 학교는 온라인 개학 시작(4.9)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 (배경) 확진자 규모 감소 등 방역 성과 및 국민 피로도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 제기, 생활방역 준비기간 감안해 강도 완화
- (조치) 실외·분산 공공시설 운영 재개하고, 민간의 경우 불요 불급한 모임·외출·행사 자제 요청
 -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조정(방역수칙 준수), 지자체별로 행정지도, 집회금지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 생활 속 거리두기(5.6~)

- (배경) 신규발생자 감소 등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안정**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 (조치) 개인·집단 방역수칙 및 41개 시설별 세부지침 마련, 방역 지침 마련을 전제로 공공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학교/어린이집은 5.20부터 단계적으로 개교
 - * 고3(5.20), 고2/중3/초1-2/유치원(5.27), 어린이집(6.1) 고1/중2/초3-4(6.3), 중1/초5-6(6.8)
 - 다만, **방역상황에 따라** 수도권,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행정명령 발동** <행정명령 발동 현황>
- * **유흥시설**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운영 제한**(5.8~6.7)
- * **수도권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5.29~6.14)**: <u>학원, PC방</u>,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 * 8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6.2~):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 * **4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6.2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 각 계기 2주전 위험지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지표 상황

구분 (단계별 조치 2주전)	2.15~2.28 사회적 거리두기 전	3.8~3.2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	4.6~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	4.22~5.5 생활속 거리두기 전
일일 확진환자 수(명)*	142.4	145.1	30.3	8.6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5(%)	12.7(%)	3.3(%)	7.4(%)
및 건(%(건)) [*]	109/1994(건)	259/2032 (건)	14/424 (건)	9/121 (건)
집단발생 신규건수**	45	22	5	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74.0	62.8	89.9	86.0











붙임3

집합 · 모임 · 행사 제한 해외사례

국가/단체	군중·모임 제한에 대한 입장 및 권고
WHO	- 1000명 이상 다중 모임 위험도 평가
미국 CDC	- (3.16.) 향후 8주간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축제 금지 권고 * 컨퍼런스, 축제, 퍼레이드, 콘서트, 스포츠 행사, 결혼식 등 - (5.1.) 10인 이상 모임 자제 - 점차 50인 이하로 확대
대만	- 실내 100명 이상, 실외 500명 이상 모임 연기 또는 취소
싱가포르	- (3.20.) 250명 이상의 모임 중단 - (3.26.) 10명 이상의 모임 금지, 공공시설(대중교통 및 쇼핑센터) 내 평당 16㎡당 1명의 군중 밀도 유지
스위스	- (2.28.) 1,000명 이상 행사 금지 - (3.13.) 100명 이상 행사 금지 - (3.20.) 5명 이상 행사나 회의 금지
영국	- 동거자가 아닌 경우 3명 이상의 공공장소 회합 금지 (특별법으로 경찰력 동원 근거 마련) * 예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모임, 장례식 참석, 이사·취약계층 돌봄·응급조치·법적 의무 이행 등 - (Soft Lockdown) 100명 이하의 모임에 대해서만 허용
네덜란드	-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오스트리아	- (3.10.) 500명 이상 야외행사 및 100인 이상의 실내 행사 취소 - (3.15.) 5인 이상 공개모임 금지 - (5.2.) 10인 이상 모임 금지

덴마크

- (3.11.) 100명 이상 이벤트, 행사 취소나 연기 권고

- (3.18.) 10명 이상 모임 금지

- 30~50인 이상 금지로 완화 예정

- 8.31.까지 500명 이상 모임 금지











국가/단체	군중·모임 제한에 대한 입장 및 권고
노르웨이	- 참가 예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모든 행사 금지 - 수도 오슬로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참석인원이 50인 이상 행사 개최시 사전 허가 필요 - (5.7.) 소규모 행사 최대 50인까지 허용(영화관 포함)
포르투갈	- 5인 이상 모임 금지 - (5.4.) 10인 이상 모임 금지(장례식은 제외, 단 가족만 참석 허용), 밀폐 장소는 100m'당 최대 5명으로 제한, 면적 200m'이내 소규모 상점 최대 인원수 절반으로 제한해서 재개
체코	- (3.13.) 30인 이상 행사 및 모임 개최 금지 - (4.24.) 10인 이하 모임 가능 - (4.27.) 15인 이하 종교모임 가능 - (5.11.) 100인 이하의 사회(결혼, 종교행사), 스포츠, 문화행사 가능
이스라엘	- (3.11.) 100명 이상 모임 금지 - (3.15.) 10명 이상 모임 금지 - (3.19.) 2인 이상 옥외 모임 금지 - 결혼식은 하객 금지, 장례식은 20명 이내, 할례는 10명 이내 - (5.7.) 20임 이내 모임 허용 - 향후 2주 내 50명까지 허용 - 5월 말부터 100명까지 확대 예상
캐나다	- 온타리오주 5명, BC주 50명, 알버타주 50명, 매니토바주 10명, 퀘벡주 2인 이상 모임 금지
호주	 가족, 커플을 제외하고 3명 이상 모임 금지 필수적 장소(병원, 약국, 대중교통 이용, 식료품 구매)는 실내 100명, 실외 300명 이내 (3.18.) 100명 이상의 실내모임 및 500명 이상의 실외모임 전면 금지 (5.15.) 최대 10명 허용(가정 행사 추가 5명 가능), 4㎡당 1명 허용, 장례식은 실내 20명, 실외 30명까지 허용
뉴질랜드	- 완화 2단계: 실내 최대 100명, 실외 최대 500명의 모임 가능 - 완화 3단계: 공공장소 폐쇄(웨딩, 장례는 10명 제한)
스페인	- (3.14.) 대규모 모임 금지 - (5.11.) 실내 50인 이하, 실외 400명의 좌식 문화 활동 허용







말레이시아 - 2인 주요 목적(생필품 구입, 병원 이동시)만 이동가능(서부: 1인 외출만 가능)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